

의안번호	2218631
의 퇴 인	강명구의원
회 답 일	2026.5.13.
추계번호	26B244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국가가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법 제71조¹⁾에 따라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1)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건수는 4만 5,234건, 징수액은 3,703억임 (지방자치단체별 원인자 부담금 부과건수 및 징수액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 해당 자료에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따라 부과·징수된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2025	45,234	391,962	44,748	370,307	486	21,655	96.0
2024	49,097	376,358	47,845	362,282	1,252	14,076	96.3
2023	59,315	519,186	58,093	515,006	1,222	4,180	99.2
2022	79,013	513,109	78,041	495,474	972	17,635	96.6
2021	80,118	397,610	79,125	383,531	993	14,079	96.5
2020	76,832	316,876	75,714	302,650	1,118	14,226	95.5
2019	74,043	336,545	72,050	333,148	1,993	3,397	99.0
2018	81,317	339,101	80,345	345,232	972	△6,131	101.8
2017	88,842	388,200	88,080	375,916	762	12,284	96.8
2016 이전	982,316	3,704,949	976,419	3,611,211	5,897	93,738	97.5

주: 분할납부, 납부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차이 발생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이 시행되어 국가가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필요한 상수도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경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범위, 수도시설 신설·증설 수요 및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면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수요 및 지원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5년	
서울	22,382	
부산	18,560	
인천	47,587	
대구	7,267	
광주	5,274	
대전	4,546	
울산	13,225	
세종	2,892	
경기	71,345	
강원	37,837	
충북	55,385	
충남	29,244	
전북	5,321	
전남	11,587	
경북	16,492	
경남	13,665	
제주	7,698	
합 계	370,307	